

경운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원격수업지원 및 질 개선 등을 통하여 본교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 및 기능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
2. 원격교육 콘텐츠 질 관리
3. 원격교육 환경 구축 및 지원
4. 학습관리시스템(LMS) 등 원격교육 관련 시스템 운용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장 조 직

제4조(임직원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 명
3. 직원 약간 명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·운영·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
2.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원격교육지원센터의 규정 제정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9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대학교의 지원금, 산업체 및 개인의 출연금,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5장 보 칙

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